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
   - □ 제출일자 : 2003년 11월 18일
   - □ 제 출 자 : 종로구청장

2. 위원회 회부
   - □ 회부일자 : 2003년 11월 24일
   - □ 상정일자 : 2003년 12월 16일
     <제13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>

3. 개정사유
   - □ 3년마다 일몰제로 시행하고 있는 구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.12.31자로 종료됨에 따라 행자부에서 마련한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되었음
   - □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일부 감면대상을 폐지 또는 조정하고,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및 관련법률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등을 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4. 주요골자
   - □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중 재산세·종합토지세 면제대상에 주거용 외에 상업용 부동산 추가(안 제7조)
   - □ 전용면적 40㎡이하의 임대주택 중 재산세·종합토지세 면제대상에 영구임대주택 외에 국민임대주택 추가(안 제8조)
   - □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 취득한 미분양된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기간 5년을 3년으로 단축(안 제16조)
   - □ 2002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종료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 업에 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감면규정 삭제(안 제18조)
   - □ 조례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재연장(안 부칙제2조)

5. 검토의견
   - □ 본 조례 개정안은 3년마다 일몰제로 시행하고 있는 각 자치단체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도래됨에 따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간의 의견수렴 및 조정을 거쳐 마련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을 근거로 만들어진 개정안임
   - □ 감면조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에서는 이제까지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부동산에 대해서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주거용 외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주거용 부동산과 동일하게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는 점을 감안 추가하여 감면대상에 포함한 것이며, 우리 구 조례 제7조 제3호에 의하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용도에 관계없이 감면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본 개정안은 문화재보호구역 외의 지정된 문화재에 상업용 부동산

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바람

□ 안 제8조에서 감면대상 임대주택 중에 영구임대주택 외에 국민임대주택을 추가한 것과 안 제16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 취득한 미분양된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, 안 제18조에서 적용시한이 종료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 감면규정 삭제는 임대주택건설 촉진등 저소득층의 수혜범위는 확대하면서 그 외에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면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으로서 정부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됨

□ 다만 개정안 중에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구세감면 확대는 우리 구의 실정과 특수성을 감안할 때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서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.
우리 구는 서울의 도심에 위치하다보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등 예산수요는 많으나 타 자치구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포함하여 비과세대상 면적이 전체면적의 66.7%에 달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70%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나 중앙정부 및 서울시로부터 이에 대한 아무런 보전(補塡)대책 없이 또다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구의 입장으로 볼 때 합리적이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으로서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에 문화재 지정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내용도 산정항목에 추가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등 대책이 따라야 될 것으로 사료됨.
참고로 현행조례 제7조제3조에 의하면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시에서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용도에 관계없이 구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우리 종로구의 경우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이 295개소로서 본 조례 개정으로 상업용부동산을 추가한다 하여도 추가로 감면되는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

6. 참고자료(관련법규)

□ 지방세법 제7조(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)
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
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

□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(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)
④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·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·등록세·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부과표준에서 공제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(개정 2001.12.29)

1. 취득세·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있어 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(이하 이 항, 제5항,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"감면대상세액"이라 한다)의 전액을, 그 다음 3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 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
2.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 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(이하 이 항, 제5항,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"공제대상금액"이라 한다)의 전액을,

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

⑤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·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·등록세·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 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.

1.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
2.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,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
3.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,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

□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(등록 등)

①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·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. 다만,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 및 국립현대미술관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에 관한 등록요건과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주택법 제10조(공동사업주체)

③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.

□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(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)

①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.<개정 98.11.13, 2002.9.11, 2003.6.25>

1.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

2.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